

의안번호	2206731
의 퇴 인	박지혜의원
회 답 일	2025.2.10.
추계번호	25D6490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발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,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원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주한미군반환공여지 개발위원회 설치·운영	20	20	20	20	20	100	20

주: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의2(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의 설치)	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고, 그 관리·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를 설치	의무규정
2	안 제13조의2(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발위원회 등)	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발위원회를 두고, 동 위원회의 운영·지원과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인 지원하기 위하여 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발실무위원회를 설치함	의무규정
3	안 제14조(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)	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반환공여구역 내의 국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소요경비 전부 또는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의2(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의 설치)	×	특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연도별 사업계획 시행 자금, 사회기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자금 등의 규모를 현 시점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곤란
2	안 제13조의2(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발위원회 등)	0	
3	안 제14조(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)	×	-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,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공용-공공용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우에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-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조율의 하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경비 전부 또는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-다만 보조율의 하한이 적용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추가 지원 대상인 지역을 예상하기 어렵고 추가 지원 대상 사업·예산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계가 곤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추계 대상은 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발위원회 운영비¹⁾임
 - 안 제13조의2는 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고,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, 국방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정하며, 도시 및 지역개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
 - 다만 당연직 위원 수를 고려하여 민간위원이 20명 위촉되는 것으로 하고, 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으로 1인당 25만원²⁾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회의를 분기당 1회씩, 연 4회³⁾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 - 따라서 위원회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2,000만원(20명×25만원×4회)이 될 것으로 예상됨

[표 2] 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발위원회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주한미군반환공여지 개발위원회 설치·운영	20	20	20	20	20	1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1) 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발실무위원회의 경우 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발위원회의 운영·지원의 성격으로 민간 위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
- 2) 기획재정부의 「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에 따르면,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,000원을 지급하되,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,000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, 원격지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·식비·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
- 3) 행정안전부의 「2024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」에 따르면 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발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인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최근 1년간(2023 7월~2024 6월) 개최 실적 없음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홍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홍연	02-6788-4673	limhy@nabo.go.kr